

# Nozick의 소유권리론에 대하여

구 영 모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철학과 박사과정)

## I

우리는 이 글에서 노직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sup>1)</sup> 나타난 그의 소유권리론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정의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이른바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한 사회의 재화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정의로운가? 하지만 노직은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자원들이 하나의 큰 사회적 그릇에 담겨진 채 어떤 중앙 기관의 정의로운 분배를 기다리며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그릇과 같은 것은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곤 사람들과 자연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생산물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그것들의 분배를 서로 독립된 문제들로 다룰 수 없다. 노직의 생각은 어떠한 중앙분배과정에도 의존함이 없이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분배적 정의'라는 말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라는 보다 중립적인 말로써 이 논의의 이름을 붙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의 소유권리론(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란 소유물에서의 정의를 다루는 정의의 이론인 것이다. 노직은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들을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로, 시간단면 혹은 중국상태 원리라는 것인데 공리주의가 그 예이다. 이러한 정의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하나의 분배를 평가할 때

---

1)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l Books, New York, 1974), 남경희 역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83); 이하에서 ASU로 표기.

오직 그것의 구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서 어떠한 부정의를 행함이 없이 어떤 하나의 배열이 다른 하나의 배열로 대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A가 10, B가 5 가진 경우는 A가 5, B가 10 가진 경우와 꼭 같은 효용을 산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산출되는 효용량이 동일한한, 어떠한 분배를 선택할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분배에서 또 다른 한 분배로 옮겨 가거나 어떤 한 분배보다 다른 한 분배를 택할 때에 어떠한 부정의도 관여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의 행동 혹은 상황을 고려하는 노직의 이른바 정의의 역사적 원리와 대비된다.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러한 역사적 원리의 한 예이다. 어떤 하나의 분배가 정의로운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관련있는 특징들과 상응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노직은 역사적 원리를 다시 둘로 구분하는데 정형화 원리와 비정형화 원리가 그것들이다. 정형화 원리에 따르면 정의로운 분배는 어떤 자연적인 차원 혹은 차원들의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각자의 노동, 필요, 공적 등에 따라 각자에게,<sup>2)</sup> 노직은 말하기를, '분배적 정의의 이론의 과제가 <그의 ...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의 여백을 메꾸는 것이라 생각함은 이미 정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sup>3)</sup>'; 이제껏 제안된 거의 모든 분배적 정의의 원리들은 정형화 원리들이다<sup>4)</sup>. 이에 반해, 노직은 그의 역사적 소유권리론이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정형화된 역사적 원리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분배들이 상응해야만 하는 하나의 정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들을 다룬다. 즉, 그것은 어떠한 재산의 취득

2) 노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대목이 있다. ASU p.156에서 그는 정형화 원리가 역사적 원리의 한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서도, 'I.Q.에 따라서 분배하라'는 예가 정형화 원리인지만 역사적 원리는 아니라고 한다. 어떤 하나의 원리가 중국상대 원리인지 아니면 정형화 원리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역사적 비정형화 원리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3) ASU, pp.159-160

4) ASU, p.156

이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절차들의 집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당신이 어떤 재산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유하게 될 때 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당신의 재산 소유는 정당화된다.

노직은 말하기를:

만약 세상이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다음의 귀납적 정의가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주제를 모두 커버하리라.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2.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3. 어느 누구도 1과 2의 (반복적)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sup>5)</sup>

소유물의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는 어떻게 사물들이 소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된 상태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는 이미 정의롭게 소유된 재화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한다. 노직의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의 핵심은 소유물의 이전은 자발적일 때에만 그리고 오직 자발적일 때에만 정의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가 완전히 정의롭지만은 않으므로 (사람들이 때로는 힘이나 사기 등에 의해서 재화를 얻기도 하므로) 과거의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소유물의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the principle of justice in rectification)가 또한 필요하다. 이 글에서 우리의 논의는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에 국한되고, 나머지 두 원리들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계속하기로 한다.

5) ASU, p.156

## II

이제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비록 어떤 의미에서 소유물의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가 노직의 소유권리론에서 보다 더 근본적이긴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노직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소유권리론을 거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할 때, 그의 주장은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노직의 윌트 챔버린(Wilt Chamberlain) 예는 자유가 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정형화된 이론들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정형이,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실현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재화의 분배 상태를 D1이라 부르자. 이제 가정하기를:

윌트 챔버린은 입장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인기 선수여서 여러 농구팀들이 서로 스카우트하려 한다 ... 그는 한 팀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매 홈 경기의 경우 매 입장권 가격에서 25센트가 그의 몫이다 ... 한 시즌에 일백만 명의 관중이 그의 홈 경기들을 관전하며 따라서 챔버린은 미국인 평균 수입보다 훨씬 많은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수입보다도 많은 금액인 25만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는 이 수입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는가?<sup>6)</sup>

노직의 첫 번째 논점은, 소유물의 자발적 이전이 어떠한 정형이라도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분배로 변형시킴으로써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분배 D2는 정의로운가? D2가 정의롭다는 것이 노직의 두 번째 논점이다. 말하자면, 만약 D1이 정의로왔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D1으로부터 D2로 옮겨 갔다면, D2또한 정의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직은 정의롭지만 원래의 정형과는 같지 않은 분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노직의 주장을 받아들

6) ASU, p.161

인다면, 우리는 정형화된 정의관을 포기하는 것이다. 유일한 대안은 D2가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D1을 강제하는 것이다. 노직의 세 번째, 그리고 정형화 이론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만약 자발적인 행동들이 어떤 하나의 분배를 교란시키게 될 것이라면 그 분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 행동들을 막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i) 자발적 교환은 정형들을 뒤집어놓을 수 있다.

(ii) 만약 D1이 정의로왔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으로부터 D2로 옮겨 갔다면, D2 또한 정의롭다.

(iii) 어떤 하나의 정형을 강제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를 요구한다.

윌트 채임벌린의 예에 대하여 혹자는 노직이 그 예를 뒤틀어진 형태로 들었다고 불평할지도 모르겠다. 그는, 돈이란 것 자체가 모두 없어져야만 하며 생필품에 대한 중앙 분배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할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일단 자본주의적 교환 제도가 주어지면 정형들은 뒤집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자본주의적 교환 제도들을 용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른바 노직의 정형화된 정의관이 화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의 경우를 간과했다고 결론내릴 것이다.

그런데 노직은 이러한 반론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주의적 무화폐 사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재화와 용역을 서로 교환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하여 불평등이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또한 소규모의 공장들이, 금지되지 않으면, 생겨나리라는 점을 인지하라. 나는 나의 사유물(D1에서 할당된)의 일부를 녹여서 어떤 기계를 만들어낸다. 나는 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일 주일에 한 번씩 철학 강의를 해주고 그 대신 그대들로 하여금 나의 기계를 동작시켜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고 나는 이를 다른 무엇과 교환한다 등등 ... 사회주의 국가는 상호 합의된 성인들 사이의 자본주의적 행위도 금지해야만 할 것이다.<sup>7)</sup>

따라서 우리는, 분배가 화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노직의 가정이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파해야만 한다. 일단 재화가 소유되어 있는한, 자발적인 이전은 원래의 분배를 뒤집어놓을 것이다. 이것은 화폐 경제에 대해서나 비화폐 경제에 대해서나 꼭 같다.

이제 책임벌린 논증의 첫 번째 논점, 즉 자발적인 교환이 정형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보자. 자발적 거래에 의해 정형이 교란된다는 것은 사실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대답은, 정형들이 그저 아무 이유없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탐욕에 의해 정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를 들어 하나의 정형을 유지하려고 할런지도 모른다. 비화폐 경제 사회주의를 간절히 원하는 한 사회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사회 내의 개인들은 자발적 교환을 통해 그들의 몫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깨뜨리지 않기를 원하므로 그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노직은 대답하기를,

이는 다음의 비현실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 (1) 모두가 그 정형을 유지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한다 ...; (2) 각자는 그 자신의 행동과 타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행위가 그 정형을 파괴시킬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3) 광범위한 분야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조정하여 그 정형에 꼭 맞출 수 있다.<sup>7)</sup>

우리는 (2)와 (3)을 정형화된 정의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자격요건들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1)과 같은 특징을 가진 어떤 한 사회, 혹은 약화된 형태인 (1'): 압도적 다수가 정형화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어떤 한 사회를 가정해 보는 것이 정말로 비현실적인가? 정보의 부족과 불완전한 조정에 의해 한 정형이 파괴되었으나 사람들이

7) ASU, pp.162-163

8) ASU, p.163

그 정형을 유지하기를 원하므로 최선을 다해 이미 생겨난 불평등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에 그 정형의 파괴가 장기간이라기보다는 단기간의 어려움에 그치고 마는 어떤 한 사회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에 의해 우리는, 노직이 자발적인 거래가 허용된 경우에도 하나의 정형이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이 노직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즉 이제껏 한번도 대규모의 사람들이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정형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더구나, 우리가 가정한 사회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인 교환이 정형들을 뒤집어놓을 수 있다는 노직의 첫 번째 논점이 정당화된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다.

노직의 두 번째 논변, 즉 만약 D1이 정의롭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D1으로부터 D2로 옮겨갔다면 D2또한 정의롭다는 논변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 같다. 정의로운 상황들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 또한 정의롭다는 노직의 주장<sup>9)</sup>은 자명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직의 또 다른 주장, 즉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자발적인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직은 만약 하나의 거래가 자발적이라면 그것은 정의롭다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자발성이 정의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노직의 또 다른 주장, 즉 자발성이 정의의 필요조건이라는 것과 함께 노직의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게 된다 : 하나의 거래는 그것이 자발적일 때에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정의롭다.

우리는 노직이 소유물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의 자격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해 로크적 단서를 도입하고 있음에 유의해야만 한다.<sup>10)</sup> 로크적 단서에 의하면, 예를 들어, 어느 누구도 사막의 유일한 오아시스를

9) ASU, p.151

10) ASU, pp.179-180 로크적 단서는 이 글의 제 III부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사유화할 수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에 의존해 있는한, 그들이 그 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상황은 사유화 이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어느 누구도 그 오아시스를 사유화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구매할 수도 없다. 여기서 노직은 소유물 이전의 자발성이 정의의 충분조건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소유물 이전의 자발성에 의해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의 전 물량이 어느 한 사람의 손에 놓이게 될 경우, 로크적 단서가 위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듯 강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직의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 보인다. 다음의 논의들은 노직의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의 몇가지 결함들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자발적 거래는 정의롭다는 주장에 다시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자. 우선, 언제 하나의 거래가 자발적인지 분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용된 말들의 형식이 여기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노상강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네 돈이나 네 목숨 중 하나를 내놓아라!” “여기, 내 돈을 가져가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교환과 강제교환을 구분해야만 하고,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주장은, 사실, 모든 자유교환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분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의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어야만 하는 선택에 직면한다면, 그는 일하도록 강제되거나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인가? 노직을 말하기를:

한 사람의 행동이 자발적이냐의 문제는 그의 선택지들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만약 자연의 사실들이 그러한 제한을 가한다면 그때의 행위들은 자발적이다.(내가 날아서 가고 싶은 곳에 날개가 없어 걸어간다 해도 이는 자발적이다.) 타인들의 행동들은 어떤 한 사람의 이용가능한 기회들에 제한을 가한다. 타인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만드는가의 문제는 그 타인들이 그들이 행한 바대로 행할 권리가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sup>11)</sup>

노직에 의하면, 하나의 행동이 비자발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어떤 한 사람의 선택지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하고, 둘째, 타인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반드시 권리 침해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노직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sup>12)</sup> 26명의 여자들과 26명의 남자들이 있어 이들 각각이 일대일로 결혼하길 원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결혼 상대자로서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남자 26명에게 A부터 Z까지, 여자 26명에게 A'부터 Z'까지의 순위를 매기는데 동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연스럽게 A와 A'은 자발적으로 결혼하길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각각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호할 것이므로. 비록 B는 A'와 결혼하길 원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B는 B'와 결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계속 반복되어 마침내 Z와 Z'로 하여금 서로 결혼하든가 아니면 독신들로 남든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Z와 Z'은 서로 결혼하도록 강제되었는가? 노직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 내에서 행동했으므로, Z와 Z'는 자발적으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한 노동자가 일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선택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권리들을 침해함이 없이 행동하는 한, 그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네 돈 아니면 네 목숨!”이라고 위협하는 노상강도는, 그가 그렇게 위협할 권리가 없으므로, 당신으로 하여금 돈을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직은 자유교환과 강제교환을 구분한다. 그런데, 강제에 대한 노직의 정의(definition)가 이상하게 보인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그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11) ASU, p.262

12) ASU, p.263

못하게 될 때 그는 강제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나의 행동들을 방해할 때, 그의 행위가 정당화되건 아니건, 나는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에 대한 노직의 정의는 방해가 강제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함축하고 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오직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을 때에만, 오직 어떤 사람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방해할 때에만, 나는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노직의 정의를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주장과 결합시킨다면, 우리는 정당한 사유 재산의 보호로 인해 내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다시말해, 사유 재산권의 주장에 입각하여 당신이, 이를테면, 당신의 땅에 텐트를 치려는 나를 막는다면, 강제에 대한 노직의 정의에 의거, 나는 강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강제에 대한 노직의 이러한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직은 정당하게 투옥된 죄수의 경우 그 죄수가 감옥에 갇히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의해 탄광 속에 갇히게 된 광부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노직은 그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더구나, 철학과의 김양이 물에 빠졌는데 그녀가 수영을 못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당신이 배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며 그녀를 구해 주는 조건으로 백만 원을 줄 것을 제의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로 하여금 백만 원을 당신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이 김양의 곤경의 원인이 아닌한 (당신이 김양을 물에 빠뜨리지 않는한), 노직은 그녀가 돈을 내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고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그 돈을 준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정의롭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은 착취이기 때문에 자유교환이라 할 수 없다. 어떤 사람 A가 다른 어떤 사람 B가 피하도록 강제되는 해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A는 B의 필요에 의해 이익을 보거나 B를 착취한다. 김양의 경우, 그녀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련의 상황에 의해 돈을 내도록 강제되었다. 착취자인 당신은 그 기회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만들지는 않았

지만 김양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 그러므로 김양은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의 절박성 때문에 당신의 제의에 따르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직은 자유교환과 강제교환을 명확히 구분해 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듯하며, 따라서 언제 하나의 거래가 자발적인가 하는 최초의 질문은 여전히 불명확한 채로 남게 된다.

다음으로, 하나의 속임수 거래에 대하여 노직은 그것이 비자발적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속임수 거래들은 피해자의 진의에 반대되는 거짓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그 거짓 믿음은 하나의 계약이 성사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 피해자에게 심어진 것'이라고 말할 것이므로. 또한, 노직은 속임수 때문은 아니되 실수로 맺은 계약도 비자발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거래의 본성에 관한 실수가 그 거래를 자발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직이 한 거래의 결과에 관한 실수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에디푸스(Oedipus)는 조카스타(Jocasta)와 동침하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비자발적인 근친상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그는 그가 행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논점을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소유물 이전의 어느 한 측면만 보고 그 이전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만약 그것을 내가 사전에 알았다라면 나는 그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동의는 자발적인 것인가? 이러한 추론을 윌트 채임벌린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자. 나는 내 돈 25센트를 채임벌린에게 주는 것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내가 D1으로부터 D2로의 이행에 공헌하기를 선택했다는 것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러므로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시즌 첫날 25센트를

13) 이것은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행동들이 집합적으로는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더 이상의 논의를 위해서는 E. Quest, 'Whatever Arises from a Just Distribution by Just Steps is Itself Just', *Analysis*, 37 (1977),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시즌 마지막 날 채임벌린이 그동안 25만 달러를 번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불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노직은, 위의 경우가 하나의 실수를 포함하고 있고 실수의 경우 그 책임은 당신의 것이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실수로 맺은 계약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다. 노직은, 도덕적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당신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들거나 꼬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일어났거나 혹은 당신이 실수로 행한 일들에 대해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노직의 입장이다. 여기서 그의 입장은 일관되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과연 그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언제 소유물의 이전이 자발적인가의 논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일련의 소유물의 이전들이 강제, 착취 혹은 사기 따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실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거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실수도 없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더 나아가, 우리가 자발적인 수단에 의해 D1으로부터 D2로 이동한 월트 채임벌린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고 가정해 보자. 정의를 근거로 D2에 반대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가? 다시말해, 만약 D2가 정말로 자발적인 단계들에 의해 하나의 정의로운 상황인 D1으로부터 따르는 것이라면, 그래도 D2에 반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소유물 이전이 제 3자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것이다. 월트 채임벌린의 경우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자원들을 이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채임벌린의 재산 축적에 반대할 어떤 이유라도 가지고 있는가? 노직은 “제 3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정당한 몫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몫은 변하지 않는다<sup>14)</sup>”라고 말한다. 그렇다

면 무슨 근거에서 제 3자들이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G.A.Cohen은 논증하기를, 노직의 주장은,

하나의 적절한 의미에 있어서, 틀렸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효력있는 몫이란 그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에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 되었다면, 그는 특정 사람들이 아주 큰 몫을 가질 때 보다 훨씬 더 잘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포함하여 제 3자들은 그 계약에 반하는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계약에서는 그러한 이해 관계가 간과된다.<sup>14)</sup>

여기서의 논점은, 돈이 곧 힘이요 제 3자의 위치는 다른 사람들의 힘의 축적에 의해 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윌트 채임벌린의 예외적인 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윌트에게 일어난 일은 그 사회 내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에 의해 집값을 올리거나 혹은 카르텔을 조직하여 임금을 낮추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제 3자들은 윌트 채임벌린 같은 거래들에 의해서 명백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손들에로의 유증에 의한 불평등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소유물의 자발적 이전이 심각한 불공정(unfairness)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왜 채임벌린의 고손자 고손녀들이 윌트가 벌어들인 돈에 붙은 복리 이자로부터 혜택을 보아야만 하는가? H.Steiner의 말처럼 :

한 개인의 응분들이 그의 조상들의 유산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

14) ASU, p.161

15) Cohen, 'Robert Nozick and Wilt Chamberlain : How Patterns Preserve Liberty,' *Erkenntnis*, 11 (1977) p.12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성서적 정도의 권위를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의 소유권리적 정의관의 근거는 별로 명확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sup>16)</sup>

하지만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노직이 말하듯이, 우리가 '선물증정이나 다른 애정이 깃든 행동들'을 금지하기를 원하지 않는한, 우리는 적어도 약간의 자발적 이전들이 허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직이 소유물의 자발적 이전에 의해 정의가 충족된다는 원리의 명백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가 이제껏 보았듯이, 그 원리는, 특히 노직처럼 강제력과 속임수는 금지되지만 착취와 과실계약은 허용되는 식으로 해석할 때, 전혀 명백하지 않다.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는 단순히 이전 주체들의 동의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 교환의 모든 결과들을 알았다더라면 당사자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른다는 논점이외에도, 하나의 교환이 제 3자들과 후손들에 미치는 영향들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하나의 거래가 자발적일 때 그것이 정의롭다는 안이한 직관은, 소유물의 자발적인 이전들이 심각한 불공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증에 의해 논박된다.

이제 노직의 세 번째 주장, 즉 하나의 정형을 강제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계속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침해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자. 우리는 이 주장이 어떻게 그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특정한 자발적인 이전들을 금지함으로써 하나의 정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거래의 자발성에 의해 정의가 충족된다(sufficient)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강제적인 재분배에 의해 정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자발성이 정의를 위해 필수적(necessary)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노직은 이러한 간섭들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따라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특정한 거래들을 금지하거나 혹은 강제적인

16) Steiner, 'Justice and Entitlement' in *Reading Nozick*, ed. J.Paul(1982), p.382

재분배를 시행하면서, 하나의 정형을 강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노직의 세 번째 주장은 논박될 것이다. 강제 재분배의 문제를 일단 논외로 한다면, 우리는 노직의 자유의 개념 안에서 하나의 정형을 강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교수직들은 ... 어떤 정형에 의해 채워진다 ... : 업적, 교수능력 ...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어떤 정형화된 원리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명백히, 어떤 종류의 자유는 이 "정형"을 계속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 그러나 물론 개인들은 그러한 자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러한 자유들은 교수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로부터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교수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팔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개인적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한된다고 결론내릴 것인가? ... 그것은 말도 안된다.<sup>17)</sup>

대학에서는 교수직들이 여러 사람들의 특정한 정형화된 기준들—우분, 능력, 자격 등—에 의해 채워져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소유물들의 정형을 가지고 있다. 교수직들이 증정이나 판매에 의해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들의 교수직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유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막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사람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예로부터 우리는 자유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권리(pre-existing rights)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교수들이 그들의 직책들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17) Cheyney C. Ryan, 'Property Rights and Individual Liberty,' in *Reading Nozick*, p.329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분명히 자유란 선인정된 권리에 의해 전제되어 있고, 이 점은 노직도 ‘내 칼에 대한 나의 재산권은 내가 원하는 곳에 그것을 놓아 두게 허락하나 당신 장롱 속에 놓아 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sup>18)</sup>라고 말하면서 인정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노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나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직은 어떤 사람의 자유는 오직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가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 방해 받았을 때에만 제한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강제에 대한 그의 견해의 또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오직 어떤 사람이 당신의 실행가능한 선택지들을 당신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에만 당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강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유는 오직 어떤 사람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할 권리가 있는 일을 못하도록 할 때 제한된다. 만약 우리가 이 분석을 따른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될 때까지 어떤 것이 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이 분석은 우리의 논의의 초점을 자유로부터 권리로 옮기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노직의 견해에 의하면, 권리는 자유에 우선해야 한다. 명백히 우리는 최고의 교수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직책을 팔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직위를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그러나 재산 소유물들에 대해선 어떠한가? 그것들은 내가 원하는대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우리는 재산권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재산 소유자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여러 권리들이 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개조하거나 파괴하거나 낭비 또는 소비할 수 있는 권리; 주어 버리거나, 유증하거나 혹은 팔 수 있는 권리 등. ‘Full Liberal Ownership’

18) ASU, p.171



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권리들의 총합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어떤 사람에게 Full Liberal Ownership을 주는 것은 그에게 위의 모든 권리들을 주는 것이다. 한편, 노직도 인정하듯이<sup>19)</sup>, 권리들의 어떤 일부분들을 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있다. 아파트에 세를 사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그것을 팔거나 개조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 여기서의 논점은, 만약 어떤 사람이 권리들 중 일부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가 필연적으로 나머지 권리들 모두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Full Liberal Ownership 보다 더 약한 소유권이 있다. 앞서 예에서의 교수들은 어떤 소유권적 권리를 가지지만 그것들은 Full Liberal Ownership 권리들 보다는 약한 것이다.

이제 이 논의를 윌트 채임벌린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자. 우리가 소유물들의 정형 D1에 따라 분배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이나 교환 등에 의한 자원의 어떠한 이전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가정하자. 노직에 따르면, 이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D1 소유물들을 이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노직은, 만약 사람들이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유물들을 이전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논증한다. 그는 말하기를:

이들의 각각은 자신들의 돈 중 25센트를 채임벌린에게 줄 것을 선택했다. 그들은 이 돈을 영화 구경하는 데, 또는 캔디를 사는 데, 또는 Dissent나 Montly Review 잡지를 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그들 중 일백만 명은 그의 농구 경기를 구경하는 대가로 그 돈을 채임벌린에게 주는 데 합의했다.<sup>20)</sup>

그러나, D1에서 사람들이 자원들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Full Liberal Ownership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의하라. 사람들은 소유물들을 이전하는 권리를 가짐이 없이 그것들을

19) ASU, p.282

20) ASU, p.161

점유하고 소비할 권리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D1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유물들을 이전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D1에서 소유물들을 가질 권리에 대해, 예를 들어, 양도할 수 없다든가, 혹은 좀 더 온건하게, 양도할 수는 있되 세금을 물어야 한다든가 하는 단서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가 침해됨 없이 특정한 교환을 금지 당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산권들이 Full Liberal Ownership 권리들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노직은 재산권들이 정말로 소유물의 무제한적인 이전의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의 견해를 옹호하려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시도가 행해지면, 증명의 부담이 그에게로 떨어진다. 자유가 정형들을 뒤집는다는 그의 주장은, 노직의 자유관 내에서는, 오직 그가 사람들이 자원들을 소유하고 소비할 권리들을 가질 때 그들이 이 자원들을 이전할 권리 또한 가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노직의 자유관 내에서는, 하나의 제한이 오직 권리 침해일 때에만 자유 침해가 된다. 자유가 정형들을 뒤집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노직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들을 정말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져야만 한다. 자유는 더 이상 근본적이지 않다. 자유에 대한 노직의 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노직이 자유가 권리들을 요구한다는 논증에 의해 바로 그 권리들의 집합을 옹호하려 한다면 그는 순환 논리에 빠질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자면, 자유에 대한 권리란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다: 당신이 할 권리가 있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권리. 결론적으로, 재산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이론도 이러한 권리만으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 재산권에 대한 논증은 노직의 자유관 이외의 것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노직의 자유관에서 하나의 제한이 오직 권리 침해적일 때에만 자유 침해가 된다는 것을 보았다. 자유란 단지 당신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을 강제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정형이 소유자가 원하는 바대로 재화들을 이전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형들이 이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 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러므로, 노직은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유에의 호소에 의존해서 안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두 논증들, 첫째, 사람들이 개인적 사유 재산권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 재산들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들은 또한 그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 교환, 유증할 권리들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제 그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III

사유재산에 대한 로크의 옹호를 검토하면서 노직은 사유재산의 정당화의 문제를 고려한다. 로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한 사람은 그의 노동을 어떤 자연물과 혼합 시킴으로써 그것을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한다고 논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데, 이 때 그는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좋은 질들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야'(로크적 단서: the Lockean proviso)하고 또한 그가 취한 것이 허비되어서도 안된다. 로크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땅의 열매와 땅 자체가 사적으로 소유되어질 수 있다.<sup>21)</sup> 사유재산에 대한 로크의 설명을 소개함에 있어서, 노직은 왜 어떤 한 사람이 그 자신이 사유화한 것으로부터 타인들을 제외시키는 권리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사유화한 것 안에는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던 것, 그 사람이 타인들을 배제시키는 권리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크의 논증에는 난점들이 있다. 노직은 한 사람의 노동이

21) John Locke, *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 (Cambridge Univ. Press) 중 *Second Treatise*, sec. 26

섞여질 수 있는 대상들의 한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묻기를: 만약 한 우주인이 사인으로서 화성에 택지를 조성한 경우, 그는 ... 우주의 비거주지역 전부에 노동을 가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특정한 터에 노동을 가한 것인가?<sup>22)</sup> 다음으로 노직은, 로크가 만약 내가 내가 가진 어떤 것—나의 노동—을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어떤 것에 섞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노직은 묻기를, 이것은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의 취득이라기보다는 내가 소유한 바의 상실이 아닌가? 그는 이 논점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의 예를 든다. 만약 내가 한 깡통의 토마토 주스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바다에 부어 그 입자들(내가 추적할 수 있도록 방사선이 쬐어진)이 바다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나는 이 행위를 통해 바다를 소유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나의 토마토 주스를 허비한 것인가?<sup>23)</sup>

만약 로크의 논증이 당신의 노동을 무소유된 것에 가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소유권리를 얻는다는 전제에 근거해 있다면, 그것은 노직의 토마토 주스의 예에 의하여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전제는, 보통의 경우 어떤 것에 노동을 가하면 그것이 더욱 가치 있고 혹은 적어도 더욱 유용해 진다는 것이다. 노직이 인정하다시피, 로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함으로써 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그의 정당화에 무게를 더하였다. 그러나 노직은 다시 묻는다: 왜 한 사람의 소유권리가 그의 노동이 생산해 낸 부가 가치에뿐 아니라 대상 전체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노직은 약간의 논평을 한다: 어떤 실행할 만한 또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부가 가치 재산제도가 고안된 바 없으며 그러한 제도는 아마도 Henry George의 이론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반대에 부딪치리라고 생각된다.<sup>24)</sup>

그런데 노직은 로크의 견해를 논박하는 데 지나치게 성급한 것 같다. 왜냐하면, 로크도 노직에게 반박할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토지의 최초 가치가 노동에 의해 더해진 부가 가치에 비해 하

22) ASU, p.174

23) ASU, p.175

24) ASU, p.175

찮은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는 경작된 토지의 유용도가 비경작지의 그것보다 천 배나 크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취해야 하는 것은 대상 전체가 아니고 오직 생산된 가치의 증가분이어야 한다는 노직의 주장은 로크의 견해 내에서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로크의 이론이 비판들에 견디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후에, 노직은 취득에 있어서의 어떠한 적절한 정의의 이론도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질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야 한다는 로크적 단서의 한 변형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직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의 상황도 다른 사람들의 무소유물에 대한 사유화로 인해서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사유화로 인해 내가 더 못살게 된다면, 나는 그것에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로크적 단서에 대한 가장 직선적인 해석은, 같은 종류의 것들이 타인들의 사유화를 위해서 남겨져 있지 않는한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 이것은 과거에 타당 했었으나 오늘날 더이상 그러하지 않다. 그런데 노직은 지적하기를:

이 단서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과거에도 타당(이 경우 항구적 그리고 유용 가능한 재산권이 발생한다)했었을 리 없다는 논증이 가능할 것 같다. 충분한 양 그리고 동등한 질의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사유화하려는 사람 Z를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사유화한 사람 Y는 Z를, 이전에 Z가 소유했던 바 사물에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없는 상태에 남겨 두었으며, 따라서 Z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Y의 사유화는 로크의 단서에 따르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사유화한 사람 X는 Y를 보다 악화된 상황에 있게 했다. 왜냐하면 X의 행위는 사유화의 허락을 종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X의 사유화도 허락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끝에서 세 번째로 사유화한 자 W는 사유화의 허락을 종식시켰으며, 이는 X의 위치를 악화시켰으므로, W의 사유화 역시 허락 가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항구적 재산권을 사유화한 사람 A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up>25)</sup>

이것을 강한 로크적 단서라고 부르자.

자연적이고 무제한적인 재산권의 확립을 원하는 노직으로서는 강한 로크적 단서에 대해 응수해야만 한다. 여기서 노직의 전략은 강한 로크적 단서를 약한 로크적 단서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약한 로크적 단서란, 비록 타인들이 사유화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타인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질 좋은 것들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들이 취할 것은 충분하지 않지만 타인들이 사용할 것은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약한 로크적 단서는 위반되지 않는다. 노직의 생각은, 비록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좋은 질의 것들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유화의 결과로서, 기회의 감소를 상쇄하는 다른 것들이 여전히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sup>26)</sup> 다시말해, 사유화 기회의 상실을 보상해 주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노직은 사람들이 사유 재산제 하에서 얼마나 더 잘살 것인가에 대해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길, 사유 재산제는

생산 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쥐어 줌으로써, 사회내의 생산물을 증대시킨다; 자원을 분리된 개인들이 관리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로 하여금 시험해 보도록 설득시켜야 할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이 없기 때문에 실험이 권장된다; 사유 재산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정형이나 유형의 위험을 지길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게 하며, 하여 위험 부담의 전문화가 이룩된다; 사유 재산제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시장을 위해 자원의 현재 소비를 삼가게 함으로써 미래의 사람들을 보호한다; 사유 재산제는 인기 없는 사람들에게 대체적 고용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 이들이 자신들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또는 소수 관리 집단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등등.<sup>27)</sup>

우리는 로크적 단서의 종합적인 논점이 타인의 사유화의 결과로

25) ASU, p.176

26) ASU, p.176

27) ASU, p.177

인해 어느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임을 안다. 노직은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로크적 단서를 해석한다. 즉, 단서의 노직적 해석이란 사유화가, 모든 사항들이 고려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상황이라도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확실히, 어떤 잘 계산된 사유화는 노직적으로 해석된 단서를 위반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막의 유일한 우물에 의존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유화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우물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유화가 없었을 때 보다 처지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우물을 잘 관리한 결과 다른 우물들이 모두 말라 버렸을 때 그의 우물만 마르지 않아 남은 물 전체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이때에는 그의 소유가 노직적 단서를 침해하지 않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의 소유가 타인들의 처지를 (사유화가 없는 경우 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화가 없었다면 남은 물도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문제의 그 사람이 우연히 물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다른 우물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렸다면, 그의 우물에 대한 소유는 타인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고 따라서 그의 우물에 대한 재산권은 제한되어야만 한다. 비록 윤곽에 있어서는 그 원리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경우들에서 우연적인 것들과 비우연적인 것들을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노직은 노직적 단서의 결과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의 충분 조건들이 강화된다고 언급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물을 사유화할 수 없다면, 그는 타인들로부터 그것을 사들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소유물의 이전은 그것이 자발적일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정의롭다는 노직의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의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물 이전의 자발성이 정의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소유물 이전의 자발성으로 인해 부족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 소유물 이전의 자발성이 노직적 단서를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직의 견해에 의하면, 그 단서란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 경제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것은 Fourier의 제안에 대한 논의에 암시되어 있는데 Fourier는 주장하기를, '문명의 과정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자유들(열매를 따고, 목장을 일구고, 사냥하는 자유들)을 빼앗아 갔으므로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공여는 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당화 된다.' 노직은 응답하기를, '이것은 너무 강한 주장이다. 이 보상은 문명의 과정이 순손실을 가져다 준 사람들, 문명의 이익이 이 특정의 자유의 손실을 상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 져야 할 것이다.'<sup>28)</sup> 노직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장점들이란 모든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 토지를 사유화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사유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다는 처지가 더 낫다는 데 있다. 이것은 재산의 공리주의적 정당화로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재산권들이 노직적 단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는 방법으로서 의도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서에 대한 노직적 해석이 갖는 애매성과 난점들을 간과해야만 한다.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노직적 단서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사유 재산 일반의 정당화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자. 마치 Fourier의 경우처럼, 이때의 문제는 재산이 작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의 처지가 사유화가 일절 없을 경우의 그들의 처지 보다 더 나으냐 더 못하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사유화가 정당화되는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마치 사막의 유일한 우물의 경우에서처럼, 그 특정 사유화가 어느 누구의 처지라도 악화시켰는가의 여부를 물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비록 타인의 특정한 사유화가 어떤 사람의 처지를 그전보다 악화시켰지만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경우 보다 오히려 그 특정 사유화 후에 그의 처지가 향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예로, 자기 땅에 인접한 땅의 사유화로 인해 자기 땅에의 출입이 더 어려워진 농부를 생각해 보라. 그의 상황은 그 사유화로 인해 악화되었으나 문명이 그에게 순손실이 될 정도로 나쁘게 된 것은 아니다. 노직은 이 경우에 어떻게 그의 단서를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다.

28) ASU, pp.178-179 각주



비록 그의 의도는 단서를 거시적으로 적용—농부 자신도 그 이웃의 사유화를 허락하는 재산 제도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는 불평을 가지지 않는다는 식으로—하는데 있다는 추론이 명확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껏 단서의 노직적 해석을 정당한 사유화의 필요 조건으로서 다루어 왔다. 그것은 또한 충분 조건으로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가: 만약 사유화가 어느 누구의 처지도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화된다? 노직은 그의 단서가 정당화된 사유화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여지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정당하고 영구적이며 유증 가능한 재산권이 가능하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론을 확립시키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 조건으로서의 노직적 단서는 실패하는 것 같다. 논점은 이러하다: 비록 우리가 정당화된 사유화의 충분조건이 사유화로 인해 어느 누구의 처지도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해도, 무엇을 타인 상황의 악화로 보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노직은 이것을 비교의 하한선 문제(the problem of the baseline for comparison)<sup>29)</sup>라고 부른다. 우리가 타인의 상황이 '악화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에 비해서 악화된음을 의미하는가? 노직에 생각에 의하면, 적절한 비교는 사유화가 일절 없는 경우의 상황과의 비교이다. 그러나 동등하게 적절한 다른 비교들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A와 B 오직 두 사람만이 있는 어떤 한 세계를 가정해 보자. 이 세계의 소유되지 않은 토지들을 사용하여 A는  $m$ 만큼을, B는  $n$ 만큼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는 A가 모든 토지를 사유화하고  $n+p$  ( $p>0$ )의 임금의 일을 B에게 제의하여 자신은  $m+q$  ( $q>0$ )의 몫을 가진다. 이것은 B의 처지를 개선시키므로 노직적 단서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B가 그 토지를 사유화 했었다라면 그는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어쩌면 B는 A에게  $m+q$ 의 임금의 일을 제의할 수 있었고 그 자신은  $n+2p$ 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A의 실제 사유화는 B의 처지를 그가 다른 어떤 실행 가능한 배열하에 있는 경우에 비하여 악화시켰다. 그러나 왜 이러한 가능성, 혹은 더 나아가 공

29) ASU, p.181

동 소유의 가능성은 A의 사유화의 정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간과되어야 하는가? 만약 A가 그 토지를 사유화하기 전에 B가 그렇게할 것을 고려했다가 한 사람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논점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A는 전 토지를 사유화하고 B의 처지를 (만약 B가 전 토지를 사유화할 수 있었을 때 실행에 옮겼을 경우보다) 악화시켰다. A의 사유화는 B의 상황을 악화시켰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렇듯 비교의 하한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노직은 왜 우리가 그의 비교 하한선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하한선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유화로 인해 어느 누구의 처지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악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사유화는 정당화된다고 이해한다면, 로크적 단서는 사유 재산의 형성을 금지시킬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배열하에서는 처지가 현재 자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직은, 로크적 단서가 정당화된 사유화의 충분 조건으로서 고안되었다고 결코 말한 적이 없으며 그것은 오직 필요 조건일 뿐이라고 응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그가 소유물의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리에 대한 엄밀한 논거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직의 단서가 정당화된 사유화의 필요 조건으로서 만족스러운가? 그것은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만약 사유화가 없는 경우보다 타인들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즉, 노직식으로 해석된 단서가 위반된다면), 그 사유화는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과의 김양이, 그녀의 특별한 재능 덕분으로, 무소유 제도하에서 과도하게 잘살고 그 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삶을 사는 하나의 세계를 상상해 보자. 그 세계에 재산 제도가 도입되어 그 덕분으로, 비록 김양은 그 전만큼 잘살지는 못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잘살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은 김양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새 제도가 단지 한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그 제도가 정당하지 않다든지 혹은 부정 의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전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노직적 단서가 정당한 사유화의 필요 조건으로서조차도 그 타당성에 회의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글의 앞부분에서 자유가 정형들을 뒤집는다는 노직의 주장이, 그의 자유관 내에서는, 재산권이 소유물의 이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재산권 이론의 가정위에서 있음을 보았다. 이어서 우리는 재산권이 소유물의 이전권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소유물의 이전권을 가지지 않고서도 그것의 점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유 재산권에 대한 노직의 논증 중 어떠한 것이 사유 재산 권리들이 이전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한, 이 물음에 대한 노직의 유일한 대답은 정의(definition)에 의해 그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X에 대한 재산권 개념의 핵심은 ... X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 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sup>30)</sup>

그러나 더 이상의 논증이 주어지지 않는한, 우리가 재산권이 무제한의 이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노직의 소유권리론의 또 다른 약점을 보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로부터, 우리는 노직이 제시한 소유물의 이전이나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이론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따라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30) ASU, p.171